

공
고

기안용지

문서번호 432.4

(전화번호 342)

전결규정 조호
전결사항

처리기한	기안자	결	제1안 내부결재
시행일자	구획정리과 김의진	제2안 내부결재	<i>167P</i>
보존년한	기안일자 69. 5. 9.	결	<i>167P</i>
보	도시계획국장	<i>167P</i>	
조	구획정리과장	<i>167P</i>	
기	도시계획국장	<i>167P</i>	
관	도시계획국장 정지기장 시민과장	<i>167P</i>	
협조	환자개인 정지기장	도시계획과장 시민과장	(법무과장) 행정과장
경수신조	각안참조	발 제 167P	정 서 167P
제목	종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인가 시행기간 변경거절		
제1안 내부결재			
<p>1. 성동구 종로동, 군자동, 구이동, 능동, 지역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 변경 거절이 요청되었기 건설부장관에 건달하였</p> <p>2. 관할 토지소유자들에게 주거 시키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 9월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</p>			
제2안			
<p>· 공고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 167호</p> <p>167P 3-1</p>			

제목 중곡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인가 신청기간 변경지정

서울특별시 종곡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건설부 공고 제 44호 (69. 5. 7)로 기획사업으로 시행할 것을 결정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10조 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 신청기간이 결정되었기 동일 시 행인가 제 9호 2학에 의하여 공고 합니다.

~~제 1항~~

가. 사업명 중곡토지구획정리 사업

나. 시행지구 성동구 군자동, 구이동, 능동, 중곡동, 각 일부 지역

다. 시행면적 2,743,842[㎡] (830,000 평)

라. 신청기간 1969. 6. 30까지

마. 기타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0비자료
고 공람에 공합니다.

1969. 5.

서울특별시장

제 3 안

수신 성동구청장

발신 시장

제목 동 건

귀 구관내 성동구 군자동, 구이동, 능동, 중곡동, 각 일부 지역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신청기간이 결정되었기 통보하니 관계동장에 통보 할 것은 물론 계시관에 게시하여 위해관 개인에 주시시켜 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.

첨부. 공고문 사본 1부. 끝.

제 4 안

수신 동부토지구획정리사업소장

발신 시장

제목 동

별첨 공고문과 같이 본 사업은 관내 성동구 군자동, 구이동, 농동, 중곡동
각 일부 지역에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신청 기간
이 지정되었기 통보하니 이 해관계인에게 적극 주지 시킬 것은 물론 계시판등에
~~제작~~~~제작~~ 시킬 것.
첨부. 공고문 사본 1부. 끝.

제 5 안

수신 성동구 군자동 70의 4 중곡토지구획정리조합 설립추진 위원장

제목 동 건 발신 시 장

마하께서 당시 경우 건설부 장관에 요청한 중곡토지구획정리사업 인
가 시행기간 변경지침에 대하여 별첨 공고문 사본 ~~←→~~과 같이 변경지침
되어 당시에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였기
통보하니 인가 신청에 속도 있으시기 바랍니다.

첨부. ~~건설부~~ 공고문 사본 1부.

서울시 공고문 사본 1부. 끝.

3-3

서울시 기관별 고시(제공)

4/10

61